

의안 번호	2277	[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7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 (미래전략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중갓집도서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공공도서관 이용료 부과 근거 및 폐기된 자료의 개인, 단체, 기관 등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5조(대표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)
 - 울산중갓집도서관을 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
- 안 제18조(이용료 등) 도서관 이용료 부과
- 안 제21조(기증자료)
 - 기증받은 자료가 적합하지 않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하는 개인, 단체, 기관에 무상제공 가능
- 안 제22조(자료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
 -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하는 개인, 단체, 기관에 무상제공 가능
- 안 제28조(도서관 문화행사 전개)

- 도서관 문화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모집운영 및 실비지급 가능

○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다. 근거법규

○ 「도서관법」 제29조, 제34조, 제45조, 제48조

○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25조, 제33조, 제34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옥범)

○ 본 조례안은 울산종갓집도서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공공도서관 이용료 부과 근거 및 폐기된 자료 개인, 단체, 기관 등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

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도서관법

제29조(공공도서관의 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·군·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)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은 “도서관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4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)

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(도서관 인력·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)

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,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·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·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(이용료)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도서관법 시행령

제25조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국공립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)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분관(分館),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.

제33조(도서관 인력·시설·자료)

-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.

[별표 7]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

1.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

- 가.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
- 나.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
- 다.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

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
- 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- 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- 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
- 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

관·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.

제34조(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)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
2. 개인연구실·회의실 등 사용료
3. 회원증 발급 수수료
4. 강습·교육 수수료
5. 도서관 입장료(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)